

발간등록번호

71-3850000-000005-10

기업에 도움을 주는

지방세 정보

2014. 6



안양시 동안구

이 책자는

관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4 최근 개정세법, 비과세·감면, 법인 중과세 제도, 각종 기업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담당부서와 미리 상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ents * 목 차

01

지방세 개요

지방세의 의의	06
지방세의 용도	06
지방세 체계도	07
납부방법별 지방세 구분	07
지방세 용어 설명	08

02

신고 및 납부 제도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14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15
신고 납부 납세지	16
지방세 세율 일람표	17
세목별 세율 안내	18

2014년 시행 지방세제 개편 내용

03

「지방세법」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주요 개정 내용	26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개정 내용	41

04

비과세 감면제도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취득 감면	48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51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감면	54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55
물적 분할/인적 분할 감면	57
법인합병 감면	59
사업양수도(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감면	6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6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 감면제도	68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70

05

법인 관련 증과세 제도

대도시 신·증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78
대도시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	79
부동산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증과세	80
대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82
대도시 법인증과세 예외업종	83

06

구제제도

구제제도의 종류	88
사후 구제제도 흐름도	90

07

기업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지원	92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	93
중소기업육성성자금 지원	94
우수기업 선정	95
이전기업 선정	96
기업유치 포상금	97
기업 SOS 지원	98

※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기업지원과(8045-2561, 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정보

부동산 매매 시 유의 사항	102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104
셀프 상속등기 방법	108
☞ 알아두면 유용한 전화번호	111



지방세 개요

- 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의 용도
- 지방세 체계도
- 납부방법별 지방세 구분
- 지방세 용어 설명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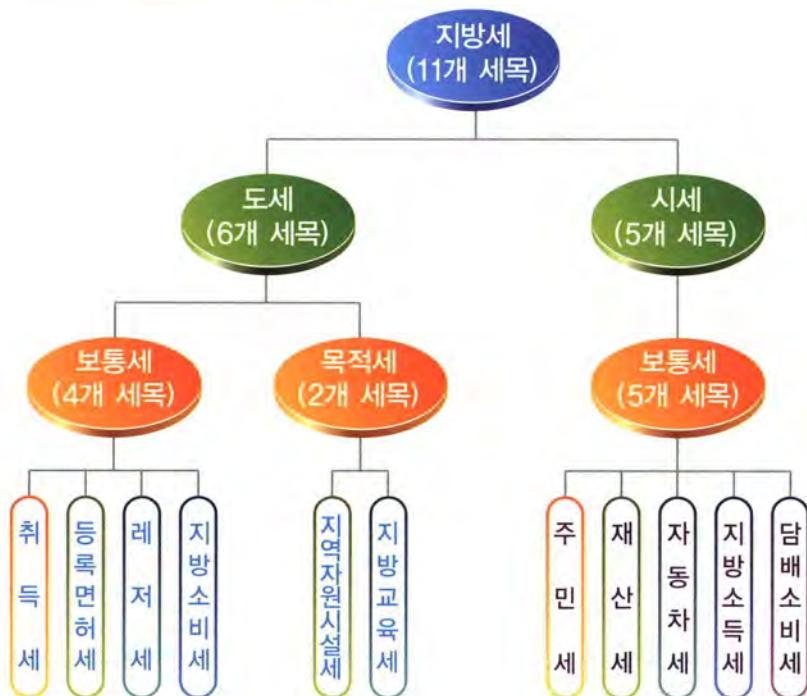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 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 지방세의 세목별 체계도



* 납부방법별 지방세 구분

- ❖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소득세분, 특별징수)
- ❖ 부과고지 세목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 지방세 용어 설명

도세

도세는 경기도 세입에 포함되어 경기도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총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을 이전(유통)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 등록분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 준법률적 행정 행위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 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시 세

시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그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이 있습니다.

주민세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사업장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환경 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소유와 사용에 대하여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소득분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세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 장소·미납 시 취하는 사후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 납부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 소득분과 같이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산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납처분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총족시키는 절차입니다.

여 백



신고 및 납부 제도

-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 신고 납부 납세지
- 지방세 세율 일람표
- 세목별 세율 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 부 기 간 (기 한)
취 득 세	• 신고 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보통 징수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주 민 세	• 신고 납부	• 균등분 주민세: 보통 징수(납기 8.16~8.31)
	• 보통 징수	•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매월 10일)
자 동 차 세	• 신고 납부	• 정기분: 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 보통 징수	• 수시분: 중고 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시 수시 부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 부과 • 연세액 일시 납부(1,2,6,9월)/분할 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 신고 납부	• 법인세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보통 징수	• 양도·종합소득세분: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납부(다음해 5.1~5.31) • 특별 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담배소비세	• 신고 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 보통 징수	• 특별 징수: 특별징수세액
레 저 세	• 신고 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 징수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보통 징수	• 다음달 10일까지(컨테이너 20일까지, 기존 지역개발세분)
	• 신고 납부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등록면허세	• 신고 납부	•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보통 징수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재 산 세	• 보통 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지방소비세	• 신고 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세액의 5%)
지방교육세	• 신고 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징수액 납입
	• 보통 징수	•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31일까지)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16~31일)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분할 납부(31일까지)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30일까지)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소득세와 동시)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1기분) 납부(16~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분할 납부(30일까지)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16~30일)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31일까지) 도시계획세분 재산세[주택분(1/2), 건물분], 지방교육세 납부(16~31일)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2), 건물분],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재산세[주택분(1/2), 건물분] 납부(16~31일)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군등분) 납부(16~31일) 도시계획세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지방교육세 납부(16~30일)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2)]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분할 납부(30일까지)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부(16~30일)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2기분) 납부(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31일까지)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16~31일) ※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신고 납부(12.1~12.15)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 레저세 : 1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 자동차세(주행세분) : 말일까지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 · 미납부 수시 부과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 부과 증고 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 부과 등록면허세 수시 신고 납부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 부과 	



신고 납부 납세지

세목		납 부 내 용	세목		납 부 내 용	
취득세	물건 소재지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법인 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등록 어업권 등록 저작권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지방 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 안분)	
	선적항 소재지			소득세분	주소지	
	등록지, 사용 본거지			특별징수분 (근로소득)	납세자의 근무지	
	등록지			특별징수분 (기타)	소득지급지	
	정치장 소재지			종업원분	사업장 소재지	
	본·지점 소재지		지방 소비세	납세자	관할세무서, 세관	
	영업소 소재지			특별징수의무자	주된 과세권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광구 소재지	저작권자 주소지 등록권자 주소지	주행분 지등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어장 소재지		담배 소비세	제조담배의 매도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저작권			국내 반입	세관 소재지	
	출판권			기타 제조담배	제조장 소재지	
	저작 인접권			기타 반입	반입한 장소	
면허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주사무소 소재지	지역 자원 시설세	전력용수	발전소 소재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하수	채수공 소재지	
	특허권			지하자원	광업권등록토지 소재지	
	실용신안권			컨테이너	부두 관할지	
	디자인권			원자력발전	발전소 소재지	
레저세	상표서비스표	등기·등록관청 소재지		지방교육세	도세 세목 납세지	
	영업허가			원자력발전	발전소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			부두 관할지		
	경마장, 경정장, 경륜장 소재지와 장외 벌매 소재지별 안분			도세 세목 납세지		

* 지방세 세율 일람표

세 목	과 세 대 상		세율
취 득 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8%, 3.5%, 4.0% 등 중과세율 : 6.8%, 8.0%, 12%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5%(10년부터)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기중치 적용 배분
주 민 세	소득분	소득세액 · 법인세액	세액의 10%
	종업원분	급여액(50인 초과)	급여총액의 0.5%
	균등분	개인, 개인사업자 · 법인	개인 : 5,000원(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 · 법인 : 5~50만원
자동차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330m ² 초과)	1m ² 당 250원
	소유분	승용 자동차	연 1cc 당 80~200원
		승합 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화물 자동차	6천6백원~15만7천5백원
담배소비세	주행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 (단력세율 26%, '09.5.21)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 당 641원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지원분	지하수	채수량 1m ³ 당 2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취득분 20% 제외), 20%, 40%, 25%, 20%, 30%, 5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 0.1, 0.15, 0.25, 0.4% 토지 종합 : 0.2, 0.3, 0.5% 별도 : 0.2, 0.3, 0.4% 분리 : 0.2% 건축물 : 0.15%
		과세특례분	재산가액의 0.14%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7,500원)
	부동산등기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부동산등기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5천원)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만8천원~6만7천5백원
종합부동산세 (국세)	주택, 토지(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주택 : 0.5, 0.75, 1, 1.5, 2% 종합토지 : 0.75, 1.5, 2% 별도토지 : 0.5, 0.6, 0.7%

* 세목별 세율 안내

취득세

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표준 세율]

상 속		무상 취득(상속, 증여 등)		원시 취득	
농 지	23/1,000	일반	35/1,000		
농지 외	28/1,000	비영리 사업자	28/1,000		
신 탁 재 산		공유물, 합유물 분할		그밖의 취득	
일 반	30/1,000		23/1,000	농 지	30/1,000
비영리 사업자	25/1,000			농지 외	40/1,000

[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적용할 세율 (제1항)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한 세율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공장 신·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

- ①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② 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특법」 제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 ③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 ④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 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중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 ⑥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적용할 세율 (제2항)	20/1,000(중과기준세율)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 사업용 및 공장 신·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 시자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	---

- ① 개수로 인한 취득
- ② 선박·차량과 기계 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 ③ 과점주주의 취득
- ④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 ⑤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⑥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 장비 또는 차량 취득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가액	8/1,000
소유권 등기	유 상	부동산가액
	무 상	부동산가액
	상 속	부동산가액
소유권 이외의 등기	지 상 권	부동산가액
	저 당 권	저 당 금 액
	지 역 권	요역지가액
	전 세 권	전 세 금 액
	임 차 권	임 차 금 액
	경매 신청	
	가 압 류	채 권 금 액
	가 처 분	
	가 등 기	부동산가액
기타 등기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법인등기)

등록 내용		과세표준	세율 일반과세	세율 중과세	비고
설립과 합병	설립과 합병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출자금액 또는 출자기액 출자총액 또는 재산금액	4/1,000 2/1,000	12/1,000 6/1,000
	출자의 증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출자증기액 출자증가액	4/1,000 2/1,000	12/1,000 6/1,000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출자증가액	1/1,000	3/1,000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본점, 주사무소 이전		1건당	112,500원	12/1,000	대도시 내로 이전은 신설
지점, 분사무소 설치		1건당	40,200원	120,600원	
그 밖의 등기		1건당	40,200원	제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우리시)	그 밖의 시	군
제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지방소득세

구분	종 류 별	세율
소득분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10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100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소득세액의 10/100

주민세

구분	종류별	자본금액(출자금액)	종업원수	세액
균등분	법인 균등분	100억 초과	100명 초과	500,000원
		50억 초과 100억원 이하	100명 초과	350,000원
		50억원 초과	100명 이하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초과	1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이하	5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명 초과	5,000원 (교육세 포함)
	그 밖의 법인			
재산분	개인 균등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균등분	시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종업원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1제곱미터 당 250원×200/100)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재산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토지	종합 합산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전, 담,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
분리 과세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2/1,000
	사치성 재산용	과세표준의 40/1,000
건축물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5/1,000
	대도시 내 공장용	표준세율의 5배(5년간)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2.5/1,000
주택	별장	과세표준의 40/1,000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자동차세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적재중량 cc당 세액	연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연 세액
승용 자동차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기타 승용 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 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 자동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		3,300원				18,000원

※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

지방교육세

①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 일반 과세분
(표준세율 - 20/1,000 = 적용세율) \times 20/100 = 지방교육세
- 취득세 중과세분(법인 본점용 및 사치성 재산 등)
[(표준세율 - 20/1,000 = 적용세율) \times 20/100] \times 3 = 지방교육세

② 다른 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100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100 (※우리시)
- 자동차세액의 30/100
-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세 해당분 제외)의 20/10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100(종전 등록세 해당 부분 제외)
- 감면한 취득세액의 20/100
- 감면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여 백



2014년 시행 지방세제 개편 내용

- 「지방세법」 취득세·등록면허세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세법」 취득세·등록면허세 주요 개정 내용

□ 개수의 범위 확대

개정 전

제6조(정의) (생략)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
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후

제6조(정의) (현행과 같음)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②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시설 ③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④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⑤ 부착된 금고 ⑥ 교환시설 ⑦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⑧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개정 이유〉

◆ 현행 ‘개수’ 대상인 시설물보다 상대적으로 고가·대규모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형평성 저해
 *옆판·밑판·지붕판 교체,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구조적 보완 등

◆ 14.1.1. 개수분부터 적용하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과세
 – 시가표준액은 시설물의 산정기준을 당분간 준용
 ※ 14년 중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보완 예정

□ 증여의 정의 신설 등

개정 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생 략)

〈신설〉

※ 「상증법」 제44조제1항, 제3항, 영33조
제3항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
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한 경우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 현행 「지방세법」에는 '증여'에 대한 정의와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
상의 혼란 기준

–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영구 인하됨에 따라 증여를 유상거래로 허위 신고
하는 사례 증가

※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 적용시 1%, 증여 적용시 3.5%

〈적용 요령〉

- ◆ '14.1.1. 취득분부터 적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세율 적용
 - 제11항제4호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하되 해당 자금을 마련한 경로 등을 주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등 참조
- ◆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기 시행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 세운영과-821, 2013.5.28)을 참조하여 운영하되.
 - 부담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담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 토록 유도하고 해당액에 대해 유상취득세율 적용

▣ 상속 재분할로 인한 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 간주규정 신설

개정 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생 략)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영 제24조제2항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
 기 · 등록 ·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
 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
 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
 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
 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
 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
 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
 할하는 경우

〈개정 이유〉

- ◆ 국세의 경우 상속등기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취득세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의 혼란 야기
※ 상속등기 5년 경과 후 재분할 협의시 당초 상속자의 취득세 환급 및 새로 운 상속자에게 대한 과세여부(부과제척기간 도과) 혼란 야기

〈적용 요령〉

-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분할되더라도 취득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재분할로 인해 지분이 적어지는 상속자에게는 환급 불가
※ 상속지분 감소자 : 지분의 양도, 상속지분 증가자 : 지분의 취득(무상)
 - 다만,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제법인에 대한 비과세 적용 보완 등

개정 전

제9조(비과세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 ⑤ (생략)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후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대해서는
..... 대해서는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이유〉

- ◆ 조세심판원 심판결과 등으로 인해 일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어 취득세 비과세 수혜, 당초 취지에 불부합
 - 타 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도록 관련규정 보완
- ◆ 비과세 조문에 면제 사항(제6항)이 포함되어 납세자의 혼선 초래
 - ※ 제1항~제5항: 취득세 비과세, 제6항: 취득세 면제
 - 또한, 비과세 대상은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면제 대상인 85㎡ 초과 공동주택 개수시 농특세가 과세*되어 납세자 혼란 기증
 -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개수시 연면적 85㎡ 초과(수도권외 읍·면 100㎡ 초과)시는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농특세법」 제5조)

〈적용 요령〉

- ◆ 타 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더라도 비과세 미적용

■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특혜세율 삭제

개정 전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생 략)

1. ~ 3. (생 략)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
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1) ~ 4) (생 략)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
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
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개정 후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개정 이유〉

◆ 수익자는 주로 신탁재산의 당초 매수자이거나 매수자에게 금전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어서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다를 바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불평형 및 탈세 야기

※ 일반적인 경우 1천분의 30,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1천분의 25 각각 적용

〈적용 요령〉

◆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계취득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13.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954,
'12.3.28)을 참조하여 사실상 유상승계에 해당할 경우에 유상세율을 적용

※ 기존 조문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시·도에서는 조례 개정 후 시행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규정

개정 전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을
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
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
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취득한 날(「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
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
을 말한다).....

〈개정 이유〉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다음 잔금을 정산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잔금을 정산한 후 허가 신청
 -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와 관례가 불부합되어 민원 등 야기
- ※ 잔금 지급 후 허가받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일로 소급. 신고납부기산일은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2012두
19229('12.12.27-파기환송), 2012두16695('12.11.29) 등]

〈적용 요령〉

- ◆ '13.12.31.이전 허가신청분도 적용되며, 기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과-688, 2013.5.20)을 참조하여 운영

▣ 법인의 차량 취득내역 통보규정 신설

개정 전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 ② (생략)

〈신설〉

1. ~ 3. (생략)

개정 후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 ◆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 중고차량 거래* 시 법인장부 허위기재 등을 통한 취득세 탈루 발생
 - *'09년 2,023천건 → '10년 2,807천건(39%↑) → '11년 3,323천건(18%↑)
 - 전국등록제 시행('10.12.1)으로 차량 등록관청과 납세지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 취득서류 확인 및 사후관리 소홀 등 우려

〈적용 요령〉

- ◆ '14.1.1.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대리인 신고시에는 납세자에게 취득신고내역 별도 우편 통보(관련지침 시행 예정)
 - ※안내문 발송 및 매도자 입력 프로그램 등 '14.1.15. 일괄 배포 예정

* 참고 통보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신설 2013. . .)

분류기호 :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수 신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발신: 등기·등록관서의 장 「인」

제 목 : 법인의 차량 매매(매도·매수)관련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적용 내역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개정 이유〉

- ◆ '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 미흡
※ '92년 대비 '11년 현재 GDP 368%↑, 소비자 물가지수 101%↑
– 정액분의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로서의 기능회복 등 도모

〈개정 사항〉

- ◆ (등록분) 과세대상별 50%~100% 세율 인상
※ 1만원 이하 100%, 1만원~5만원 75%, 5만원 초과 50%
-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적용 요령〉

- ◆ '14.1.1.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 참고1 정액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율 변동

등록대상	세수추계		
	종전	개정(구간별 인상)	
		세액	비고
• 어업권 지분이전(상속)	1,500	3,000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기타 등록)			
• 부동산(정율 외 기타 등기)			
• 부동산(정율세 최저세액)	3,000	6,000	
• 어업권(상속)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 상표, 서비스표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800	7,600	
• 공장재단, 광업재단(정율세 외 기타 등기등록)			
•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설정 이외 기타 등록)	4,500	9,000	
• 어업권(설정 외 기타 등록)			
• 건설기계(정율 외 기타 등록)	5,000	10,000	
• 상호 등(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 상호 등(선박관리인 선임, 대리권 소멸)			
• 광업권(기타 이전)			
• 조광권(기타 등록)	6,000	12,000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속 이전)			
• 상표, 서비스표(상속 이전)			
• 기타 등기(제28조제1항제1호부터 7호 외의 등기)			
• 선박(정율 외 기타 등기)			
• 자동차(정율 외 기타 등록)	7,500	15,000	
• 광업권 변경(감구)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기타 이전)	9,000	18,000	
• 상표, 서비스표(기타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외 등록)	11,500	20,000	
• 어업권(상속 외 지분 이전)	12,000	21,000	
• 광업권(이전 상속)	15,000	26,200	
• 조광권(이전 상속)			
•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법인(기타 등기)	23,000	40,200	
• 어업권(상속 외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저작권법」 제54조 등록 중 상속 외)			
• 광업권(증구 또는 증감구)	38,000	66,500	
• 상호 등(설정 또는 취득)	45,000	78,700	
• 광업권(상속 외 이전)	60,000	90,000	
• 조광권(기타 이전)			
•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설립과 납입)			
• 법인(정율세 최저세액)	75,000	112,500	50% 인상
• 광업권 설정	90,000	135,000	
• 조광권 설정			



참고2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수변동

【세제개편】

구 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우리시)		그 밖의 시		군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제 1 종	45,000	67,500	30,000	45,000	18,000	27,000
제 2 종	36,000	54,000	22,500	34,000	12,000	18,000
제 3 종	27,000	40,500	15,000	22,500	8,000	12,000
제 4 종	18,000	27,000	10,000	15,000	6,000	9,000
제 5 종	12,000	18,000	5,000	7,500	3,000	4,500

▣ 법인장부 인정범위 강화

개정 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개정 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개정 이유〉

- ◆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 법인장부 허위 기재 등을 통한 취득세 탈루 만연
 - 법인장부의 인정범위를 강화하여 일방적인 허위작성 등 차단

〈적용 요령〉

- ◆ 신고하는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비롯한 관련서류들을 확인하여 처리
 - ※ 기타 인정서류 등은 업무환경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탄력적 운영

▣ 기타 개정사항

- ◆ 토지의 범위 확대(법 제6조 제2호) : 사실상의 토지 포함
- ◆ 과점주주 연대납세의무 명확화(법 제7조 제5항) : 분법과정에서 제외하였던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 현재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148, '13.6.24)을 통해 연대납세의무 부여 중
- ◆ 잔교의 범위 조정(시행령 제5조 제2항) : 유사한 구조물도 포함
- ◆ 거래세 영구인하 관련 지방교육세 산출(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인하되는 세율(1%, 2%, 3%)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개정 내용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1) 직접 사용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보완(§2, §20, §22②, §50②)

개정 전

〈 직접 사용 용어 정의 신설(§2-8호) 〉

○ 신설

〈 직접 사용 용어 정의 보완(§20, §22②, §50②) 〉

○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

○ 사회복지법인 감면 중 직접 사용

○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직접 사용

개정 후

○ 직접 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내용〉

【직접 사용 용어 정의 신설】

◆ 그 동안 「지특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해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음.

* '직접 사용'의 용어가 116개('13.12.31 현재 「지특법」)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부동산 소유자(인적 감면) 또는 사용자(물적 감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인적 감면)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보는 견해

→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직접 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 아님.(행안부, 지방세운영과-3714, 11.8.3 등)

(물적 감면) 소유 관계보다는 사용용도 측면에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

→ 「지방세법」추정사유 중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8두15039, 11.1.27 등)

◆ 「지특법」에서 수익사업(임대 포함, §2-2호)을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히 개정

–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

【직접 사용 용어 정의 보완】

◆ 종교단체의 경우 그 고유목적 사업이 종교 업무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및 해당 부동산 보유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예외 규정 보완

2) 조례 감면 입법절차 규정 명확화 (§4)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인용규정 정비 (§4①)〉

○ 제97조의2

〈조례 감면 입법제한 규정 명확화 (§4 ②3)〉

○ (신설)

개정 후

○ 제182조

○ 제93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감면

〈개정 내용〉

-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도입에 따라 「지특법」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현행화 (법 제97조의 2 → 법 제182)
-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특법」 제93조에서 감면 입법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 감면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

3) 산업단지 감면 규정 정비 (§78)

개정 전

〈산업용 건축물 인용규정 정비 (§78③1)〉

-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후

-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 감면 정비 (§78④2가목)〉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내용〉

-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는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78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중복하여 다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간소화
※ 이와 관련한 「지특법시행령」 제34조 규정도 불필요하므로 삭제
-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임대 포함)에 대한 감면 취지는 공장건축(신·증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므로,
 - 산업단지에서 토지만 취득 후 임대수익을 올리다가,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은 감면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분양을 받은 자) 후 건축물을 완공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규정 명확화 (§121)

개정 전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감면(§121)〉

- 창업중소기업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

개정 후

- 창업중소기업 등이 직접 사용(임대용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

〈개정 내용〉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로 정의함에 따라 「조특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관련 규정 정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감면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배제 명확화

여 백



비과세 감면제도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취득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감면
-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물적 분할 / 인적 분할 감면
- 법인합병 감면
- 사업양수도(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 감면제도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취득 감면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구비서류

- 설립자 : 설립허가증, 준공검사필증, 신축 제비용(증빙서류 첨부)
- 분양자 : 분양계약서, 잔금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37.5% 감면

감면요건

-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음.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영위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추징대상

- 설립자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분양자
 -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 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사례 1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적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설립)하였다며 신축(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할 부분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으로 임대할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4793, 2004.12.30)

사례 2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추징 요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없는 비영리 장학재단 乙에게 이를 분양한 경우라면 그 후 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丙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20호, 2006.12.27. 참조) 하겠으므로, 감면조례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함.

(행자부 세정-1871, 2007.5.22)

사례 3

아파트형 공장의 추징사유 판단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라면 동 감면조례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분양한 자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아파트형 공장 분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20호, 2006.12.27. ; 제2001-310호, 2001.6.25. 참조)

(행자부 세정-3145, 2007. 8. 9)

사례 4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추징요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취득한 자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다른 업체의 직원도 이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비록 임대료 없이 운영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감면조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지방세정팀-5361, 2006.10.3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98호, 2007.2.26. 참조)

(행자부 세정-3534, 2007.8.29)

사례 5

아파트형 공장 감면 후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 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법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아파트형 공장을 법인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징대상임.

(행안부, 행심 제2006-412, 2006.9.25)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구비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인계정별원장, 연구소 설계도면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농특세 100% 감면)
- 재산세 100% 감면

감면요건

- 부동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임)의 인정을 받은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면적만큼 감면 인정
- 취득자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

추징대상

- 부동산을 취득하여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주의사항

- 부동산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므로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연구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님.(행심 제2005-62호 2005.3.3)
- 토지를 취득한 경우 4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장관의 인정을 받아 연구소로 사용해야 함.
- 부동산 취득 후 4년 이내 설치하고 4년간 연구소용으로 계속 사용해야 함.
-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 면제대상이므로 차량, 연구원 사택은 안 됨.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상의 면적만 감면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 ①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사례 1

▶ 기업부설연구소 추징사례(행안부, 지방세 운영과-357, 2011.1.20)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주식 49%를 보유한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지방세법」상 감면의 요건 및 법률효과는 납세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한 '직접 사용' 이란 소유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업 목적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가(주식의 49% 보유) 장기간(임대기간 10년)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 각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사례 2

▶ 연구소를 건축 중인 경우(지방세운영과-910, 2008.9.1)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경우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례 3

▶ 기업부설연구소 공용부분 안분(지방세운영과-4080, 2012.12.18)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 전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나 이중 회의실, 구내식당, 지하주차장 등을 기업부설연구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 내의 본점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 사무실과 기업부설 연구소의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한도로 하되(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828, 2011.12.26 참조), 한도 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 본문 단서의 추징 규정에 따라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귀문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의실, 주차장, 구내식당 등 공용사용 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舊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768, 2007.9.14 참조)으로 판단.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감면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구비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 사용계획서

감면율

- 취득세 37.5% 감면
- 재산세 37.5% 감면
- 감면분 농특세 납부
(감면된 취득세가 중과에 해당할 경우 감면분 농특세 중과)

감면요건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주장대상

-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④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신설 2011.12.3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근거법령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구비서류

-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서, 법인 장부 등

감면율

- 준공업지역 취득세 50% 감면 / 공업지역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분 농특세 납부
(감면된 취득세가 중과에 해당할 경우 감면분 농특세 중과)
- 재산세 50% 감면(5년)

감면요건

- 준공업지역 또는 택지개발지구(공업지역에 한한다)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 및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물적 분할 / 인적 분할 감면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20조 제1항 제6호

구비서류

- 분할계약서(자산승계 목록,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종전, 분할 신설 법인)
- 5년간 부가가치세 실적증명서
- 법인 장부
- 주주명부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분 농특세 100% 감면

감면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분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
- 종전 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법인을 신설
- 신설법인의 주식
 - (인적 분할) 종전 법인의 주주에게 소유비율에 따라 안분배정
 - (물적 분할) 종전 법인 100% 보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배정)
-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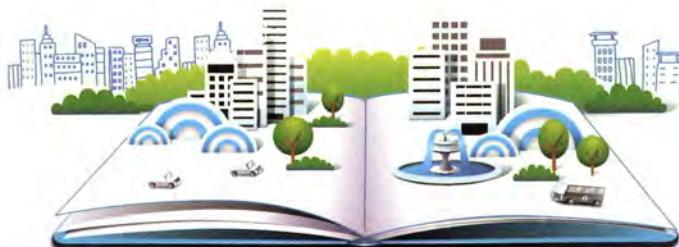
주징대상

- 분할 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분할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0.12.27. 개정)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3항(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인합병 감면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구비서류

- 합병계약서(합병,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합병 · 피합병법인)
- 사업자등록증(합병 · 피합병법인)
- 법인 장부(합병법인)
- 주주명부(합병, 피합병법인)
- 1년 이상 부가가치세 실적증명서(합병, 피합병법인)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분 농특세 감면 여부: 감면 요건 참조

감면요건

-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합병
-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부동산 취득

〈감면분 농특세 감면 조건〉

-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고,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

추징대상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0/1,0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2010.12.27. 개정)

* 사업양수도(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감면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구비서류

- 사업양수도 계약서(자산·부채 양수도 목록 첨부)
- 자산평가서(감정평가서)
- 개인사업자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도 당시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자산·부채명세서 첨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장부
- 법인 개시 재무상태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주주명부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분 농특세 납부
(감면된 취득세가 중과에 해당할 경우 감면분 농특세 중과)

감면요건

- 개인사업자가 발기인
-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
(순자산가액 <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개인사업자와 법인간 동일업종 유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제2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1**취득세 감면 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추징 여부**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969, 2008.9.3)

- ▶ 개인기업이 협동화 사업단지 내에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3.14. 선고2002두12182판결) 할 것으로 법인 전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구비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 당시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서(대표자 사업이력을 증명하는 서류)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농특세 100% 감면

감면요건

-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 ※ '창업벤처기업'에 관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참조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임대 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임대 포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❶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일 것
- ❷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 ❸ 기업이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❹ 창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될 것
- ❺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2) 창업일 기준

-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 중 빠른 날

(3) 창업 업종 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4) 중소기업자의 요건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 할 것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 및 간접 소유를 포함)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사례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매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

사례 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까지의 예비 벤처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례 3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임차 시 정당한 사유 판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행자부 세정-1735, 2007.5.14)

사례 4

창업의 범위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목적 사업이 A법인은 골재 채취 및 가공처리 판매업이고, B법인은 벽돌·블록·흄관제조 판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의 사업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A법인이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허가(토석채취 허가권) 사항을 양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행자부 세정-2960, 2007.7.30)

사례 5

창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법인 설립 이후 다른 법인의 목적사업에 이용된 적이 없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 등록을 하였다고는 하나, 임차한 당해 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토지상에 동종 업종의 공장을 건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

(행자부 세정-5199, 2007.12.4)

※ 임차공장에 대한 창업의 범위는 이미 사용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사례 6

창업 당시 창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고 이후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님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163, 2009.5.29)

사례 7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6년 전에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기간에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감사원 감심 제2007-31호, 2007.4.4)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 감면제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 조문 (조-항-호)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50%)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중과 제외	취득세 · 재산세(중과 제외) 등록면허세(중과 제외)	" §58-②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공장 · 지식산업 · 문화산업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50%)	" §58-③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7.5%) · 재산세(37.5%)	" §58-④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 조문 (조-항-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분양, 임대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50) · 재산세(37.5)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①
지식산업센터를 증축,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37.5)	" §58의2-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 조문 (조-항-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 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	「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취득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 §59-②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분양·임대를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50%)	〃 §59-③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 조문 (조-항-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①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 가의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과 사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75%)	〃 §60-① 단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취득세 (1000분의 20 적용)	〃 §60-②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 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50%)	〃 §60-③-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 · 재산세(중과 제외) 등록면허세(중과 제외)	〃 §60-③-2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 : 매매계약서, 신축 제비용, 법인장부
-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 분양계약서, 잔금 완납증명서

감면율

- 취득세 : 100%
- 재산세 : 50%

감면요건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추징대상

- 사업시행자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 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 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0.4.12.,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014.1.1. 개정〉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 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1., 2013.3.23.〉

「지방세특례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지방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판례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0두29253, 2012.9.13]

▶ 甲 주식회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에 철강동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철강동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2두17179, 2012.11.29]

판시사항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팔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이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팔호규정(이하 '이 사건 팔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팔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팔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례

지방세운영과-2569, 2012.8.9

질의

▶ 대도시 내의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신축한 공장 건축물의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지원시설이 아닌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가.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조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 시 비과세·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추징대상에 해당되면 그때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산업단지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2199, 2003.12.6. 참조) 비록, 산업단지 내의 공장인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 사무실이라고 하여도 오직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 백



법인 관련 중과세 제도

- 대도시 신·증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 대도시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
- 부동산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 대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업종



대도시 신·증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공장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는 경우
- 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Rightarrow 6.8%
※ 원시취득표준세율(2.8%), 중과기준세율(2%)
- 신고 납부 :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1. 중과세 대상 공장의 해당 조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
- 그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함.

2. 중과세 대상 지역(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정비계획법」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월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파동, 이파동, 삼파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3. 중과세 제외되는 대상 지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질의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인 공업지역에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 500m² 이상인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답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 500m² 이상인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대도시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본점용 부동산의 범위
 -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지점은 제외)
- 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Rightarrow 6.8\%$
 - ※ 원시취득표준세율(2.8%), 중과기준세율(2%)
- 신고 납부 :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1. 중과세 대상 해당 조건

- 법인의 설치 근거 법령, 소재지, 설립일에 불구하고 모든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만, 지점의 사업용 경우에는 제외)
-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때는 제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학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중과세
법인
관련
제도

질의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10년 이상 된 법인이 본점 사업용 건물을 신축 시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답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사업용 건물을 신축 시 취득세 중과 여부는 법인의 설치 근거 법령, 소재지, 설립일에 불구하고 모든 법인이 신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다만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또는 본점 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음.



부동산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중과세 대상

- 본점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
- 지점 설치일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당해 지점용)
- 대도시로 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
-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본점 이전, 지점 설치

○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blacktriangleright \text{승계취득 표준세율}(4\%) \times 3\text{배} - (2\% \times 2\%) : 8\%$$

○ 부동산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

●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 **지점(사무소)의 정의**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세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중과 대상** :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 **지점의 요건(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자 등록대상 사업장(「부가가치세법」 등)
 - 인적 설비(당해 사업 수행 직원)
 - 물적 설비(당해 직원 근무 사무실)

● 본점과 지점과의 비교

본 점	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과 별도의 사업자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예산, 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

질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상된 법인이 상가와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답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5년 이내의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중과세 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등기
※ 설립 및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포함

●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

- 영리법인 설립 및 증자(5년 이내) : 불입한 주식금액의 1,000분의 12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증자(5년 이내) : 불입한 출자총액의 1,000분의 6

●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기

- 대도시 내 지점 설치 : 40,200원의 3배(120,600원)
- 지점의 이전등기 : 40,200원

● 법인 본점이전 등기

구 분	신 소재지	구 소재지
대도시 내→대도시 내	112,500원	40,200원
대도시 내→대도시 외	112,500원	40,200원
대도시 외→대도시 내	자본금의 1,000분의 4(3배 중과)	40,200원
대도시 외→대도시 외	112,500원	40,200원

●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세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질의 대도시 외에서 설립하여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대도시 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서 규정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예외업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대도시 지역으로 전입등기 시 자본금의 1,000분의 4 세율이 적용됨.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 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 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 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 제2호 · 제5호 · 제8호 · 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 중계 유선방송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 · 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 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 경기장 · 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 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여 백



구제제도

- 구제제도의 종류
- 사후 구제제도의 흐름도

* 구제제도의 종류

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 : 사전 구제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 제도는 과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제도)

2.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1조) : 2011.1.1 신설

-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과다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경정청구 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음.

3.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118조) : 사후구제

- 지방세 부과(경정청구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는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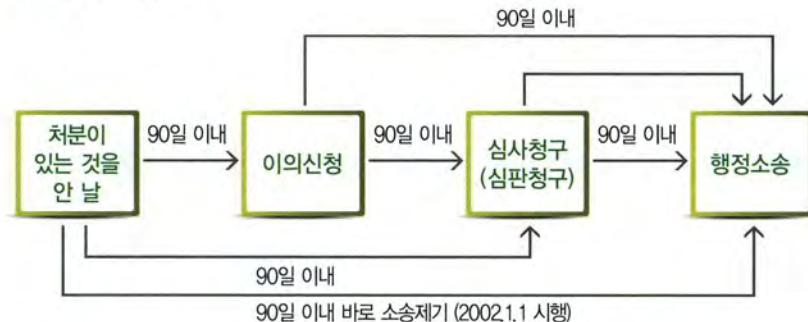
4. 심사청구/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사후구제

- 지방세 부과(경정청구 포함)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재심·성격의 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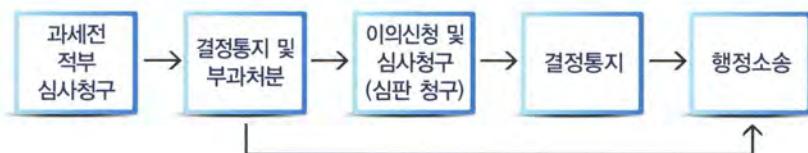
5. 행정소송

- 이의신청 절차에 구제가 안 되면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부과고지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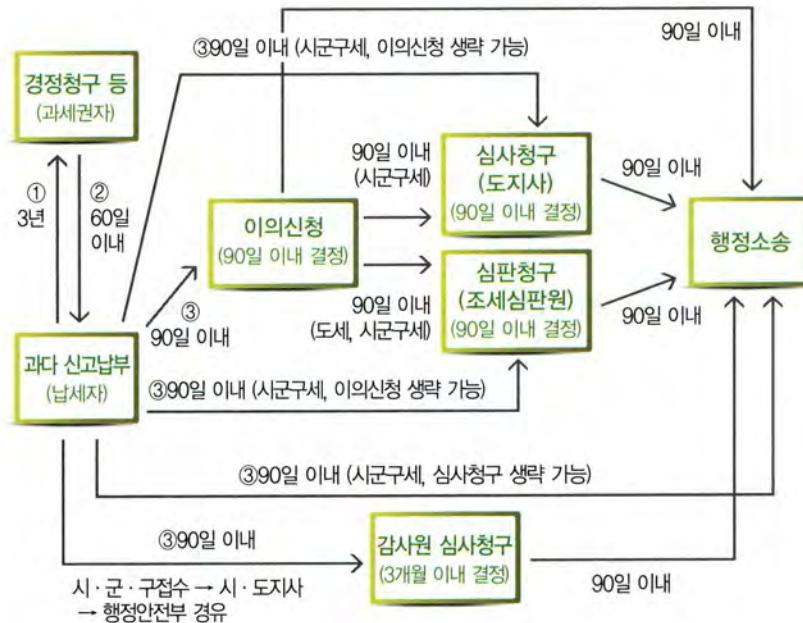
●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 사후 구제제도 흐름도





기업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지원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우수기업 선정
- 이전기업 선정
- 기업유치 포상금
- 기업 SOS 지원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지원

지원개요

● 건축주

- 지원대상 :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착공 후)
- 융자액 : 200억원 한도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건설자금의 75%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대출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 지원절차



- 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 입주 기업

- 취득세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 37.5% 감면(5년간)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별도 공고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한함) 1부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기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문의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 ☎ 031-8045-2282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

입주시시설

시설명	위치	입주기간	임대료(월/3.3㎡)
경기창조산업안양센터(K센터)	동안구 시민대로 248 번길 25	기본 2년(최대 6년)	20,510원
동안벤처센터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두산벤처다임 내)	기본 2년(최대 6년)	15,405원
만안벤처센터	만안구 안양로 138번길 5	기본 2년(최대 8년)	7,900원

입주자격

◎ 입주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을 안양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이전 조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받을 기업
- 지식산업 관련 중소기업

◎ 입주가능 업종

- 지식산업 관련 기업 : 스마트 콘텐츠, S/W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영상·영화산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산업, 전기·전자 등

◎ 선정 제외 기업

- 금융기관에서 대표자 또는 법인이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공해 발생 업체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모집절차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입주심사(서류+발표심사) → 결과발표 및 계약체결

문의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031-8045-2553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운영팀 ☎ 031-8045-5191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 융자 규모 : 1,500억원 ※2013년 대비 60억원 증액
- 자금 종류 : 운전·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 지원 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17개 업종
- 융자 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운전·기술개발자금 + 일반시설자금 : 업체당 8억 이내
- 융자 기간 : 3년(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5년(시설자금),
단기(어음할인)자금(1년)
- 융자 금리 : 은행별 「대출최고금리 사전 고시제」 운영
 - 자금종류별로 적용 대출최고금리 및 실행금리를 시홈페이지에 전·후 게재
- 이자보전율 : 1% ~ 2%(자금별)

종류별	구분	자금 성격	시이자보전율
운전·기술개발자금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1.5%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 우수기업, 도 유망중소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등록 및 인정기업 공통)		2%
특별시책자금	신규직원 고용, 관내업체 간 물품, 용역, 공사거래		1.5%
시설자금	토지, 건물 매입 등		1%

신규고용자금

- 지원규모 : 90억원
- 지원한도/기간 : 8억원/3년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안양시민 1인 이상 신규고용 또는 임시직을 정규직 전환기업
※단, 당해 연도 전입기업의 경우 전입 이후 신규고용 종업원에 한함
 - 업체별 지원액 : 5천만원/고용 1인당(임시직을 정규직 전환 시) : 3,000만원/1인당)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상반기-'14.1.6부터 상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단, 운전자금은 집중기간 운영)
하반기-'14.7.1부터 하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단, 운전자금은 집중기간 운영)
- 접수 및 평가 : 관내 협약은행(10개 은행)
- 지원결정 : 시(시→은행, 업체 통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외환·하나·씨티·SC은행

문의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 ☎ 031-8045-2284

* 우수기업 선정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선정대상

-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모범이 되는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주 수상의 경우 포함)

선정업체

- 10개 업체 내외
※여성기업 신청시 심사가점 5점 부여

지원 및 혜택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지원 : 2% (일반기업 : 1.5%)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 시의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참여 시 우대(5점 가점부여)
-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판 부착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 : 5월
- 심사 및 선정 : 6월
- 인증서 및 인증판 부착 : 7월

문의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031-8045-2552

* 이전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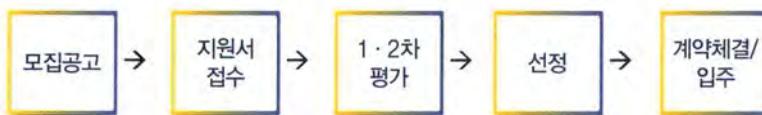
지원기간

- 2년(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

평가 및 선정

- 평가방식 : 1차 서면평가, 2차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보유콘텐츠·사업모델의 우수성, 사업화 성장성 등
 - 입주방식 : 평가 순위별로 입주 선택권 부여

모집절차



문의처

- 안양시 정책추진단 스마트창조도시팀 ☎ 031-8045-5816
- 스마트콘텐츠센터 ☎ 031-340-8000, 8009

* 기업유치 포상금

포상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첨단·지식산업 및 공고 당시 지정업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관외기업을 관내로 유치한 경우
- 투자액(토지 매입, 건축, 건물 매입 등) 50억원 이상

포상금

포상금	포상금 가산 (종업원수 기준)
• 포상금 민간인: 투자(유치)금액의 0.1% 공무원: 민간인 기준의 60% ※ 실적가점 별도 부여	20명 이상 30명 미만 10% 30명 이상 50명 미만 15% 50명 이상 70명 미만 20% 70명 이상 90명 미만 25% 90명 이상 120명 미만 30% 120명 이상 150명 미만 35% 150명 이상 40%
• 지급한도 민간인: 5천만원 공무원: 2천만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포상금 지급 방법

- 포상금은 매년 6월말 공고
- 동일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여비율에 따라 지급
- 동일인이 당해 연도 2개 이상의 기업 유치 시 기업규모가 가장 큰 건만 인정

지급절차



문의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031-8045-2552

* 기업 SOS 지원

기업 SOS 상담창구 운영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

운영기간

- 연중

내용

- 공장설립 및 주변인프라, 창업·벤처, 자금, 판로·수출, 기술·인증, 세무·회계, 교육 등

처리절차



이용방법 및 문의전화

- 직접 내방, 현장방문, 전화 ☎ 031-8045-5566
- 안양시 기업지원센터 인터넷 신청→검색창에 '기업 SOS 안양'으로 입력
- 안양창조산업진흥원(기업애로 SOS 상담) ☎ 031-8045-5186
- www.aca.or.kr / (구)www.ayventure.net
-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이용

기업애로 SOS 전문위원 상담

기업애로 SOS 전문위원 상담

상담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	상담전문위원
기술경영	(주)에쓰시시	031)445-1151	민경룡 대표
	색동법률사무소	031)381-5600	이향열 변호사
	법무법인 샘	031)425-0100	박찬력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031)388-0017	김옥수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원	031)425-2700	장원 변호사
	서안법률사무소	031)387-5400	강영화 변호사
인사노무	노무법인 평로	02)583-7111	구대진 노무사
무역	경기관세법인	031)461-2090	성령란 관세사
회계	회계법인 길인	02)3014-6000	성주형 회계사
특허법률	위드특허법률사무소	031)476-9870	박기원 변리사

문의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8045-5566
- 기업애로SOS상담센터 ☎ 031-8045-5186

여 백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정보

- 부동산 매매 시 유의 사항
-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 셀프 상속등기 방법

* 부동산 매매 시 유의 사항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 ①등기부등본(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 설정사실 등을 확인하고, ②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원·건축물 관리대장·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 계약 등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등기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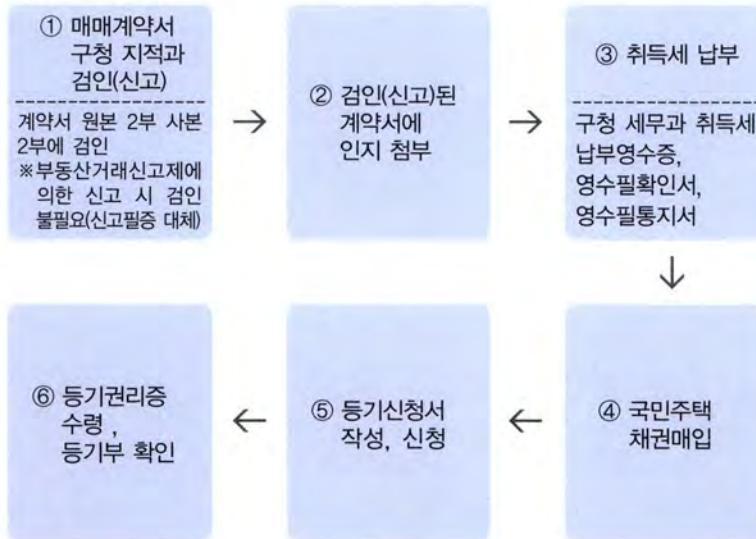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관공서의 족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주의 원칙 : 특히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신청서 부분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등기신청 수수료 : 매 부동산 당 1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5의 2)

◎ 등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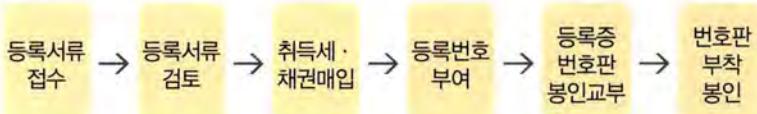
* 자동차 구매에서 폐차까지

차량 취득단계

1) 자동차 신규등록(취득 시)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거나 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담당부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매수자를 대신하여 자체 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2010.12.1.부터는 지역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한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 시행 중임.
-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 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가. 등록처리절차



나. 자동차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신조차·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인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 허가증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 시 10일간 임시운행 허가증이 교부됨)
- 임시번호판 2매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차량 취득세 영수증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 번호판 대금 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다. 신규등록 의무 해태 시 과태료 처분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별표2 참조 2011.11.25 개정]

등록신청 대행 거부	50만원
등록신청 대행기간 경과 10일 내 매 1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미반납 시 10일 내 매 1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3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자동차등록 번호판 또는 봉인 미부착	50만원

2) 차량 취득세 납부(취득 단계)

◎ 취득세 세율

〈차량·기계장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단, 경형 자동차는 면제
- 그 밖의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단, 경형 자동차는 면제
- 영업용 : 1천분의 40
- 이륜차 : 1천분의 20
- 기계장비 : 1천분의 30

◎ 차량 관련 지방세 감면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67조)
- 전국자동차등록번호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차량 보유 및 이전 · 말소단계

1) 자동차세 납부(보유 단계)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순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12, 1)의 자동차 소유자

나.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다.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2012.3.15부터 적용)	
배기량	시시(CC)당 세액	배기량	시시(CC)당 세액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법 개정(세율 조정)
- * 자동차세는 일할계산되므로 2012. 6월분 자동차세액은 2012.3.15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 세율+개정 후 세율로 각각 산정 후 합산하여 부과

라. 납기

기분	과세 기준일	납부 기간	납부 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 12월분

2) 자동차 이전등록 · 말소등록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자를 대신하여 자체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 자동차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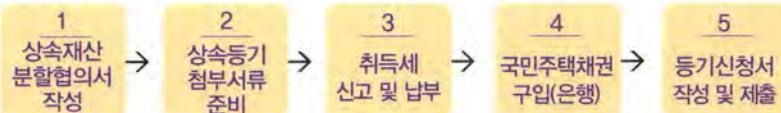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 양도증명서(인감증명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타 시·도인 경우, 단, 전국번호는 제외)
-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 자동차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입고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 · 천재지변 등은 제외)
- 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등)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 셀프 상속등기 방법

- 상속인 스스로 상속등기 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 상속절차는 가급적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 가산세 부과 유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등기소(☎ 1544-0773)에 문의 바랍니다.



Step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예시>한 것처럼 작성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작성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Step 2 상속등기 첨부서류 준비

- 피상속인(사망자)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기재)
 - 제적등본(결혼 당시부터), 제적등본(피상속인의 전 호주)
 - 가족관계등록부
 - 1) 기본증명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혼인관계증명서
 - 4) 입양관계증명서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원)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1) 기본증명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부동산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통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예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는 년 월 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 간에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부동산)

- 1)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 소유로 한다.
-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유한다.

2014년 월 일

상속인	성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상속인	성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상속인	성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상속인	성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인감도장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Step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구청 세무과)

- 상속 부동산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기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합니다.

Step 4 국민주택채권 구입(은행)

- 취득세 신고서에서 상속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합니다.

Step 5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서 다운로드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 및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전화번호

번호	기 관 부 서 명	전화번호	업 무
1	안양등기소	1544-0773	등록세 신고 시 등기업무 문의
2	안양세무서	467-1200	국세와 지방세 혼동 조심, 유가환급 신청
3	동안양세무서	389-8200	국세와 지방세 혼동 조심, 유가환급 신청
4	안양경찰서	1566-0112	운전면허
5	안양소방서	470-0211	소방 관련 허가
6	안양교육청	380-7056	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록
7	만안보건소	8045-3472	건강 진료
8	동안보건소	8045-4472	건강 진료
9	동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8045-4261	개별공시지가
10	동안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8045-435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1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	8045-4225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게임장 등록
12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8045-4356	농지원부 발급
13	동안구청 건설과 하수팀	8045-4535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14	시청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8045-2448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15	동안구청 건설과 도로행정팀	8045-4481	도로점용료
16	동안구청 도시관리과 건축지도팀	8045-4455	건축물관리대장
17	동안구청 도시관리과 건축허가팀	8045-4302	건축 허가
18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	8045-4563	주·정차 과태료
19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8045-4331	환경개선부담금
20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8045-4315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접객업 신고
21	시청 시민봉사과 차량등록팀	8045-2133	차량 등록
22	시청 시민봉사과 차량검사팀	8045-2438	책임보험 과태료
23	시청 시민봉사과 여권팀	8045-2582	여권 발급
24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8045-2391	주택 임대사업 등록
25	시청 교육협력과 교육지원팀	8045-2046	학교용지 부담금
26	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	8045-5647	유가보조금
27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팀	8045-2274	통신판매업 등록

- 동안세무과 팩스 : 위택스 신고(위임장 전송) 8045-4275, 4297

기여에 도움을 주는

지방세 정보

- 발행인 : 안양시 동안구청장
- 발행일 : 2014년 6월
- 발행부서 : 안양시 동안구청(세무과)
- 자료작성 : 세무과(도세팀)
(☎ 031-8045-4491~5)

※ 본 자료는 지방세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TEL: 031)8045-4491~5 FAX: 031)8045-4275